

(가칭)평창 산양삼 특구 수정계획(안)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6.13(금) 평창군수(산림과장)

나. 상정일자 : 2014. 6. 23(월) 제201회 평창군의회(정례회)제2차
본회의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평창 산양삼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배·생산·유통·가공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산양삼을 평창의 대표적 임업소득자원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 역할을 하고자 하며,
- 평창 산양삼의 이미지 홍보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열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국제적 스포츠행사와 연계하여 평창 산양삼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산양삼 수출 등 미래 지속가능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특구 지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현재 재배 중인 산양삼 경작지 및 옥외광고물 설치 대상지 등을 특구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특구단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특구계획을 수정하여 『평창 산양삼 특구 수정계획(안)』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특구의 명칭

- 평창 산양삼 특구

나. 특구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필지수	비고
합 계	-	4,282,476	43	
산양삼 신규재배지 조성사업(대상지 1)	봉평면 덕거리 산173번지	659,900	1	
산양삼 신규재배지 조성사업(대상지 2)	방림면 계촌리 산407번지	1,419,358	1	
산양삼 재배농가 육성사업 (기존 산양삼 재배지)	평창군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외 39	2,203,198	40	추가
옥외광고물 설치 대상지(특구 광고탑)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177-7번지	20	1	추가

4. 검토결과

○ 본 의견 청취안은, 지난 재200회 평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 상정·의결하여 의견을 찬성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금번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을 재의결받고자 하는 것임.

금번에 변동되는 사항은 기존 산양삼 재배지 및 옥외광고물 설치 대상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함면적은 봉평면 덕거리 산1번지외 40필지 2,203,218평방미터로 변경으로 인한 총면적은 4,282,476평방미터임.

또한 면적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일부 감소정과 일부 규제특례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